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6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가.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나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다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	법 제99조제2항	300만원
나. 법 제35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1호	80만원
다.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1호	80만원
라.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1호	100만원
마.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1호	
1)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	60만원
2) 10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		60만원
바. 삭제 <2016.1.19.>		

사. 삭제 <2016.1.19.>		
아.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2호	80만원
자.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3호	60만원
차.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4호	80만원
카.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5호	100만원
타.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산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6호	100만원
파.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산절차를 위반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6호	60만원
하. 법 제57조(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복지금협회의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3항제1호	100만원
거. 법 제65조(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·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3항제1호	100만원
너. 법 제69조(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99조제1항	300만원
더. 법 제93조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7호	60만원
러. 법 제93조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7호	80만원
며. 법 제93조제1항제3호(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사	법 제99조제3항제2호	

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)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 보고를 한 경우		100만원 150만원
버. 법 제93조제1항제3호(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3항제2호	150만원
서. 법 제93조제1항제3호(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99조제3항제2호	150만원
어.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8호	60만원
저.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8호	60만원
처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8호	60만원
커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99조제4항제8호	80만원